

논문 2010-1-2

국내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 사례 비교

황세운*, 용환승**

International case study on the punishment by copyright infringement

Se-woon Hwang*, Hwan-Seung Yong**

요 약

본 고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저작권¹⁾ 관련 사례 및 법률적 제재에 관해 조사하였고, 그 방법론으로는 주로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무너뜨린 인터넷 환경으로 문화콘텐츠 이용에 관한 패러다임도 디지털로 바뀌면서 국경이 사라졌다. 다른 시공간에 있는 국가에서 올린 음악이나 영화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원본과 같은 품질로 무단 복제하고 퍼뜨릴 수 있게 되었지만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정립된 저작권에 관한 윤리의식과 높은 벌금 및 형사적 처벌로 인해 저작권에 관련된 범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이용비가 싸고 저작권에 대한 검열이 적으며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P2P나 웹하드 사이트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저작권 범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키워드 : 저작권 침해, 처벌 사례

I. 서 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대량의 불법복제물이 인터넷 망을 통해 확산

산되었으며 저작물에 관한 피해 사례도 만만치 않게 증가하였다. 문화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장본인으로 불법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가 지목되고 있다. OSP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 또는 전송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웹하드·P2P사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P2P·웹하드 등 불법 OSP가 광범위하고 대중적이어서 미국 등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email: sw4822@hotmail.com)

**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email: hsyong@ewha.ac.kr)

접수일자: 2010.3.16 수정완료: 2010.4.28

1) 본 연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10년 용역 과제 수행에 의한 결과임.

주요 문화산업 수출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 음반산업은 7년 전보다 24%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80% 급감한 주요 원인도 불법 OSP로 유통되는 복제물이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콘텐츠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매년 7,000억달러(700조원)로 전체 저작권 산업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법(4조3,953억원)이 합법(4조5,370억원) 시장과 맞먹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해외 여러 나라의 저작권 현황 및 형사적 제재와 같은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국내 저작권 현황, 4장에서 P2P 관련 판례에 관해 알아본 후에 5장에서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해외 각국의 저작권

해외 여러 나라의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으며, 그 내용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탁희성)을 요약하였다.

2.1 영국의 저작권

영국의 현행 저작권법은 1988년 제정된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에 기초하고 있다.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보호하는 별개의 법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여러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포괄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라는 표제하에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로서 복제권, 공중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전달권, 개작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서 일시적 복제를 그 범위내로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폭넓게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영국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형벌규정은 약식재판에 의할 때 6월 이하의 금고 또는 기준 5등급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의 판매나 대여목적으로 제작 및 수입, 업무 또는 업무 이외 과정에서 배포행위를 통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에 약식재판에 의할 때에는 6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 최고액을 벌금형으로 선고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 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보다 낮거나 ‘실연자의 제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 전자에 있어서 약식재판에 의할 때는 3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금형을, 정식재판에 의할 때에는 6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법정최고액 이하의 벌금형을, 정식 재판에 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독일의 저작권

독일 저작권법은 새로운 기술의 이용이 저작권제도를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 및 권리내용의

보충과 확대과정을 거치면서 개정되어 왔다. 다만 최근 법개정은 독일 자체의 저작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보다는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지침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고 도처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저작권은 저작권관리법을 통해 관리단체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08년 1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축소하고 저작자와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을 유럽 저작권에 대한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강화 시켰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독일에서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공개재현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와 인접보호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만약 그러한 침해가 영업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행위의 미수까지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만약 그러한 침해가 영업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2.3 프랑스의 저작권

프랑스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법률이다. 즉 영미법계에서는

저작권에 부여하는 법적 보호의 정당성의 논거로 제시되는 공정이용의 논리가 프랑스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문학, 예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창조적이며 일정한 형태로 표현된 모든 저작물은 창조된 순간부터 그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프랑스 저작권법의 특징이다. 따라서 법률상 저작권은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법률상 등록이 요구되는 어떠한 규정도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3년의 금고와 30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범죄에 있어서 그 행위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5년의 금고와 500,000유로의 벌금형을 병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유형을 배제한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두고 있다.

2.4 일본의 저작권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각각의 권리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즉 실연권을 저작권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으며, 자작권과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해 동일한 형사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

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벌금형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의나 묵인 등과 같은 고의 책임을 전제로 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의 형사책임의 전제조건이 되는 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형법상 저작권에 관한 형벌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성이 강한 것에 관해서는 비친고죄로 되어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침해행위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그것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저작자 인격권, 실연가 인격권 침해행위

저작자 인격권 또는 실연가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영리 목적의 자동복제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복제기기를 이용하여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되는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복제에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동복제기기를 이용한 경우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복제한 경우에는 가벌적 위법성이 낮다고 보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영리의 목적으로 복제에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4) 해적판의 수입, 지정반포 및 소지행위

국내에 반포할 목적으로 수입시에 국내에서 작성하였다면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 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되는 행위

에 의해 작성된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 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되는 행위에 작성된 물건을 그 정을 알고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또는 업으로서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것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업무상 불법복제프로그램 사용행위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을 업무상 전자계산기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그 복제물들을 사용하는 권원을 취득한 때에 정을 알고 있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것을 병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사후 인격권 침해행위

저작자가 사망한 후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실연자의 사후 실연자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미국의 저작권

미국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공연권 및 전시권의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부여하기 보다는 저작물의 불법적 복제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와 저작물의 일정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1) 최대 법적 손해배상액(statutory damages)

인 침해 사례 저작물 1건당 15만 달러에 더

- 하여,
 2)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물의 무단사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defendant's profits)과
 3) 그에 따라서 계산될 실제적 손실(actual damages) 등을 고려하여 판결된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 민사적 제재

미국은 비영리목적이고 총 소매가가 1000달러를 초과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시에는 1년 이하의 금고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업적 이익 내지는 금전적 이득 목적이 있고 총 소매가 약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 배포 예정 저작물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누범인 경우에는 형을 두 배로 가중하여, 비영리 목적에 총 소매가 2500달러 초과 침해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을, 영리 목적으로 총 소매가 2500달러 초과하는 침해행위를 2회 이상 행한 경우와 상업적 배포예정 저작물 배포를 2회 이상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의 경우 저작권 침해 사례를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의 적합성을 다음과 같은 분류를 통해 검토한다.

첫째, 저작권에 대한 분명한 사전개념 없이 법적 침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분명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innocent infringers)로, 보통 법적 침해를 입은 저작물 1건당 250달러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둘째, 저작권에 대한 사전 개념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average infringers)로,

법원은 저작물 1건당 750달러에서 3만달러까지의 손해배상을 저작권 침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 침해의 분명한 의지와 의도를 확정한 경우(willful infringers)로 최고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다.

2.6 삼진아웃제도

영국은 현재 한국에 비해 인터넷 사업이 3~4년 정도 뒤져 있는 상황이지만 인터넷 콘텐츠 저작권이 매우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인터넷 인프라보다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국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듯, 영국의 인터넷 콘텐츠 관련 정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영국의 모든 미디어(TV, 영화, 출판, 인터넷) 관련 저작권은 BCC(British Copyright Council)에서 관할한다. BCC는 1988년 제정된 영국 저작권법(United Kingdom's copyright law)에 따라 저작권 관리 및 감시 역할을 보장받고 있다. 물론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법의 집행이나 제정 등의 구체적인 부분은 오픈마켓과의 협의 아래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BCC와 오픈마켓은 2008년 초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8년 2월 12일, 영국의 일간지 <The Times>는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한 'Three-strikes rule', 이른바 '삼진 아웃 제도'가 도입될 것이며, 정부와 BCC 그리고 미디어 규제 기구인 오픈마켓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소개된 삼진 아웃의 내용은 ISPs(Internet Service Providers,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의해 규제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음으로 불법 다운로드하다가 발각된 사람에게는 이메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2. 두 번째 불법 다운로드 적발 시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한다.
3. 세 번째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가 법적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자녀를 방치한 부모에게 최대 5만 파운드(약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영국에서는 자녀가 불법 다운로드를 할 경우, 부모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인터넷 속도를 늦추는 등의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단속을 해왔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영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청소년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복제였다. 영국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iPod 플레이어나 혹은 MP3 플레이어를 이용하는 10대들과 대학생들이 소장하고 있는 음악 파일의 개수는 평균 842개로 알려졌다. 또한 Hertfordshire University(허트포드셔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서는 14세에서 24세 사이의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하드 드라이브를 통해 친구들 간의 음악 공유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어떠한 불법 행위와도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수가 85%를 육박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불법복제에 관한 윤리 의식이 심각함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영국의 6개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인 British Telecommunication(BT), Virgin Media, Orange, Tiscali, BSkyB, Carphone Warehouse 등은 지난 2008년 7월에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부모 및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계획안에 합의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지난 6월 고든 브라운 총리가 청소년 범죄에 대해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영국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2,000 파운드(약 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국 정부는 2009년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최대 벌금을 £ 5,000에서 £ 50,000으로 10배 인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프랑스에서도 삼진아웃제도를 검토하여 의회에 통과가 된 적이 있었다. 1차 이메일 경고, 2차 서면 경고, 세 번째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당하거나 최대 30만유로(약 5억원)의 벌금 혹은 2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은 자녀가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한 가구의 인터넷 접속을 한 달간 차단할 수 있는 등 자녀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부모의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 3자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할 경우에도 1,500 유로의 벌금과 한 달간의 인터넷 접속차단 등의 제재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사용자 제재를 도입하면서 삼진아웃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럽 의회는 2009년 10월 상징적인 투표를 통해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소비자단체들도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상당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제공 업체들 사이에서는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인터넷 제공 업체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을 불법 다운로드 행위자로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실제로 IP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도 많을 뿐더러, 개인 소유가 아닌 무선 인터넷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법 다운로드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인터넷 제공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개인 IP 추적도 실질적으로는 힘든 상황에서 다운로드의 불법 여부를 일일이 가려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삼진 아웃을 당한 이용자들에게 냉정하게 IP 차단 통보를 해 나간다면 결국 줄어드는 소비자로 인한 수입 감소는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설령 저작권 침해자가 삼진 아웃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당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타 인터넷 제공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ISP들은 보다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삼진아웃제도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부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연설,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과 함께 삼진아웃제도는 너무 복잡하여 제도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리하여 2009년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삼진아웃제 법안이 1789년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의 산물인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III. 국내 저작권

2005년 1월 17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자, 즉, 마스터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전송권이란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일반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음악 파일이나 기타 저작물을 당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저작권이 있는 파일 등을 웹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권이 있는 파일 등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파일이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 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일이나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는 경우
- 적법하게 구입한 CD라도,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 미니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각종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에 올리는 경우 등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 받고 자료를 삭제한 때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을 이미 이용하고 허락

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사실을 통보 받고 당해 자료를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유럽과 비슷한 이른바 ‘삼진 아웃’제도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33조의 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생략-----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 복제물 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제공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내 저작권 위반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36조(권리의 침해죄)저작권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20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 137조(부정발행등 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

제 138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

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발췌:[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 9625호 시행일 2009.7.23]

국내에서 해비 업로더를 최초로 처벌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8년 5월 수익을 목적으로 영화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남모씨(33)를 체포하였다.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올려 돈을 버는 ‘해비 업로더’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초의 사건이다.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올리고 영화파일 하나당 230원 가량을 받아 90%를 업체에 지불하고 10%는 남씨가 가져 남씨의 최종 수익은 약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사건으로 남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cine21.com 2008.05.25

국내의 웹하드업체 수익금 최초환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추진한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 6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그 대표자 7명 및 상습적으로 불법 자료를 올려주고 돈을 받아 온 해비업로더(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인터넷 상에 올리고 그 대가를 받은 업로더 중 5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사람) 5명 등 17명을 우선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약 11억 9000만원을 몰수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올해 5월부터 온라인서비스 제공 영업을 시작, 사이버상의 클럽을 통해 회원 1400여 만명과 업로더 49만여명을 확보하여 총 20억 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에서 9억 5000만원을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수익금으로 보고 환수할 방침이다.

이타임즈. 장재선. 2009.11.25

IV. P2P 관련 판례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2010년 2월 무단복제한 음악 1만여곡을 P2P방식으로 인터넷에 올린 교사에게 1만 유로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제이미 토머스 VS 캐피톨레코드사>

2008년, 미네소타 주에 사는 제이미 토머스(Jammie Thomas)는 캐피톨레코드사로부터 개인 간 파일 공유를 통해 디지털 음악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받았다. 당시

논란은 배심원들 사이에서 캐피톨레코드사의 '실제적 손해'의 규모에 관한 것이었는데, 한 배심원은 전체 실제적 손해를 약 50달러 정도로 보았는가 하면, 어떤 배심원은 음악 파일 한 곡당 750달러, 또 다른 배심원은 이를 15만 달러까지 보았다. 결국 법원은 제이미 토머스에 총 22만 달러의 법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판결 직후 양 소송 당사자들은 한 곡당 9,250달러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하였다.

<그록스터 사건>

할리우드 영화계와 음반업계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당한 P2P업체 그록스터가 운영을 중단하고 피해보상금 5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록스터는 앞으로 불법다운로드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영구히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중단 결정은 지난 7월초 "개인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 P2P업체도 위법을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미니노바'는 네덜란드 국내에서만 월간 이용자가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끄는 파일공유 웹사이트로 수천건의 음악, 영화파일이 올라있다. 미니노바는 법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웹사이트에서 모두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스웨덴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의 유명 P2P 사이트 '파이어렛 베이'의 운영진 4명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각각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약 360만달러(약 48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피해업체들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홍콩

홍콩법원은 P2P 프로그램 비트토렌트를 이용해 테어테블 등 영화파일을 인터넷에 배포한 남자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호주

호주 연방법원은 2005년 P2P 서비스 카자를 제공하는 샤만 네트워크에 한 달 내로 저작권 보호 필터링 기능을 추가할 것을 명령했다. 유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만드는 유저들과 이를 다운받는 다운로더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결을 어길 경우 서비스를 폐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대만

2005년 대만의 재판소는 P2P 파일 공유사이트인 Kuro를 둘러싼 저작권법 위반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첸형제에 대해 각각 금고 3년, 사장인 그의 부친에게 금고 2년, 저작물을 업로드한 유저 1명에게 금고 4개월, 벌금 9만달러를 선고했다. 또한 무허가 파일 교환의 즉시 정지와 현재 Kuro의 서비스를 합법적인 모델로 수정할 것을 임명했다.

한국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50부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스스로 현 단계에서 각 음원의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는 것을 선별해 즉시 정지시킬수 없다고 자인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저작권법 제91조 2항 소정의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소리바다3 프로그램의 배포 및 소리바다 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명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P2P 업체 파일구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음반을 불법 다운받은 이용자 150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례가 있다.

V. 사례 비교 및 대응방안

5.1 국내 VS 해외

해외에서는 국내처럼 자체 서버를 가지고 P2P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고 벌금이 높으며 인터넷 속도도 느린 반면에 한국의 경우 인터넷 이용비가 싸고 저작권에 대한 검열이 적으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P2P나 웹하드 사이트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는 불법 다운로드의 경로로 P2P가 가장 많은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웹하드가 성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웹하드의 경우 용량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속도도 빠르다. 둘째, 웹하드와 P2P의 개념의 차이 때문인데 P2P의 경우에는 '업로드'가 의무적인 시스템, 즉 P2P를 사용하여 적발될 시엔 처벌을 받을 명확한 사유가 생기게 되는 반면에 웹하드는 '다운로드'형식이기 때문에 웹하드를 이용하고 업로드를 한 번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명확한 근거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국내 헤비 업로더 및 불법 다운로더들이 주로 웹하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5.2 대응방안

미국영화협회(MPAA)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보고한 2005년 불법 복제 피해 규모를 보면 피해액은 38억 달러이며 75만명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다. 또한 미국내 시장에서의 피

해규모는 13억달러, 해외시장은 48억달러, 해외시장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 나라는 중국, 러시아, 멕시코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6년 인터넷 검색 엔진 회사인 구글이 16억 달러에 동영상 자유희업 업로드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매입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와 관련된 이와 같은 일들은 유튜브만의 것은 아니다. P2P 파일 공유에 있어서 혁신적인 프로토콜로 인기를 끌었던 비트토렌트의 서비스 사이트인 토렌트파이는 지난 2006년 2월 영화 비지오물의 불법복제를 장려한다는 이유로 MPAA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그렇다면 불법 복제에 맞서는 MPAA의 대응 양태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전통적 캠페인과 광고

MPAA는 2003년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주니어 어치브먼트(Junior Achievement)'라는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해 그 활동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MPAA는 첫 번째 공식 캠페인으로 주요 텔레비전 네트워크에서 프라임 타임 시간대에 일제히 30초 시간을 할애하여 반 불법 복제광고를 내보냈고 전국 5천여개의 극장에서는 영화 상영 전 65초짜리 광고물을 상영한 바 있다.

MPAA가 캠페인에 들이는 시간과 돈은 시민들이 어렸을때부터 불법 복제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겠다는 장기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주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복제는 우연히 이뤄지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불법 복제를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관점에서 많은 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의 논리를 편다. 셋째, 불법 복제가 약물거래나 다른 범죄행위, 더 나아

가 테러단체의 후원금으로 쓰인다는 논리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2) 법률 제정 및 로비 활동

무엇보다도 MPAA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불법복제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률 제정과 그를 위한 다양한 로비 활동이다. MPAA, RIAA가 반 불법 복제 법률 제정을 위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펼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2007년 의회 차원에서 파일공유행위에 대한 조사 작업과 법안을 제안하도록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벌인 로비를 들 수 있다.

이밖에 MPAA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불법 복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고 미의회는 2008년 2월, 연방 재정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교들은 P2P 파일 공유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법안 조항을 삽입시켜 화제가 되었다

3) 기술적인 대응

기존의 대응 방식을 통해 MPAA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기술로는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과 부모파일스캔(Parent File Scan) 소프트웨어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그널에 정보를 새겨 넣는 프로세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디오나 사진, 비디오 등에 사용된다. 이 시그널이 복제가 될 때는 워터마킹된 정보 역시 같이 옮겨지게 된다.

또한 부모파일스캔은 아이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검색하여 해당 파일이 P2P 파일공유를 통해 받은 불법 복제된 파일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MPAA가 배포하는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MPAA가 지난하게 노력해온 대표적인 기술방식으로 브로드캐스트플래그(Broadcast Flag)를 빼놓을 수 없다. 이는 디지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저장되었는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비트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거나 저장된 콘텐츠가 다시 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가 철저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 덴마크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비율이 30% 이하인 국가에 속하며 불법 복제율은 28%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Winny, Share, Perfect Dark와 같은 P2P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이용자의 인식부재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특정 P2P만을 노리는 바이러스가 등장, 또한 P2P를 이용하게 되면 통신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저작권에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가 결국 P2P 업체인 Winny를 만든 제작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P2P 사이트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규제방법으로 하루당 일정용량 이상을 업로드 할 경우에 해당 업체에서 속도제한을 걸어버리는 방법이다. 좀 더 규제에 적극적인 회사는 P2P 프로그램의 통신량만 막아버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모두 1kb/s만 나오게 된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단속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저작권에 관한 바람직한 윤리의식을 정립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 위원회 위원인 홍승기 변호사에 따르면 “유럽, 미국 등은 업로더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도

규제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저작권보호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네티즌 스스로 다운로드 행위를 조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형성하고 정보통신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 초등학교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와 유아용 인터넷교육 지도서를 개발해 전국 초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통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윤리교육 전문가와 현직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한 초등학교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인 ‘깨끗한 정보세상’을 개발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정도서로 인가받았으며 3월 말부터 전국 5천500여 초등학교에 보급해 윤리 및 컴퓨터 교육시간에 부교재로 활용하거나 재량활동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VI. 결 론

지금까지 해외 저작권 현황과 국내 현황, 그리고 그 비교 연구를 통해서 저작권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 환경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저작권자들의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의 경우에도 관련 업체가 표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모든 무료 온라인 파일 교환 사이트를 일일이 차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저작권 관련 윤리의식을 고취, 수업시간에서의 정보통신윤리 교육 등의 노력을 통하여 서서히 저작권 범죄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1] 문선영. 미국의 불법 복제 대처 방안. 영화진흥위원회. 해외통신원보고 p31-32.
- [2] 박현주. 파일공유 서비스 관련 최신 판결 및 관련업계 동향. 정보통신 정책 제 17권 17호 통권 378호 p68-69
- [3] 성민규. 미국 저작권 최근 쟁점과 동향. 방송동향과 분석 통권 294호 2009년 4월 30일.
- [4] 장선화·안길수·조상인·강동호기자. 저작권 침해 이대로는 안된다 <2> 저작권 침해의 온상 OSP. 2008.08.19.
- [5] 주재원. 영국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쟁점과 동향. 영국 리즈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 [6] 탁희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7] 탁희성.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p62-1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8] 씨네21사이트. http://www.cine21.com/common/print.php?mag_id=34734

저 자 소 개



황 세 운

2009년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주관심분야>
CRM, 데이터마이닝, 클라우드 컴퓨팅



용 환 승

1985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1985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1985년-198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

1994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2002년 IBM T.J. Watson Research Center 방문연구원
1995년-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주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마이닝,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지털 저작권 감정